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128 제출연월일 : 2015. 3.

제 출 자: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령「지방세기본법」,「국세징수법」에 의해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, 지방세 체납처분을 중지 할 때에 공고기한을 연장하기 위하 여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(안 제24조제1호)

나. 체납처분을 중지할 때에는 상위법령 「국세징수법」을 적용하여 공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(안 제39조제3항)

3. 근거법규

가.「지방세기본법」제26조, 제80조, 및 제82조

나.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제5조 및 제8조

다.「국세징수법」제85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 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 : 2015. 1. 19. ~ 2015. 2. 9.(의견 없었음)

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호 중 "법 제80조제1항제1호"를 "영 제8조제2항"으로 한다. 제39조제3항 중 "10일"을 "1개월"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납세담보의 요구) 구청장은 법 제26	제24조(납세담보의 요구)
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 담보를	
요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	
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	
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	
한다.	
1.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	1. 영 제8조제2항
연장 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	
2. · 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제39조(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)	제39조(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)
① ~ ②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	3
중지한 때에는 일간신문·공보에 게재하	
거나 시·구 게시판에 <u>10일</u> 간 공고하여야	<u>1개월</u>
한다.	 .

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서 (의안번호 1128)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5. 3. 4.(수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5. 3. 9.(월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5. 3. 12.(목)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 : 김영국 행정지원국장)

○ 상위법령「지방세기본법」,「국세징수법」에 의해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지방세 체납처분을 중지 할 때에 공고기한 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(안 제24조제1호)
- 나. 체납처분을 중지할 때에는 상위법령 「국세징수법」을 적 용하여 공고기한을 연장하기 위함(안 제39조제3항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